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8. 4. 20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4.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98.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환)

가. 제안이유

○ 97. 8. 28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수도법 제19조의2의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함에 따른 조례명 및 관련조항 변경

○ 명칭변경(제명)

·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기능변경

· 수돗물의 안전성진단 → 수돗물의 수질평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9호
의결년월일	98. 5. 2 (제60회)

제출년월일 : 1998.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97. 8. 28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수도법 제19조의2의 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함에 따른 조래명 및 관련조항 변경
- 명칭변경(제명)
 - 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 →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
- 기능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0조)
 - 수도물의 안전성진단 → 수도물의 수질평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을 “부천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라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안전과”를 “수질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안전성향상방안 등”을 “수질향상방안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을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2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생략) 1. ~ 2. (생략) 3. 기타 수돗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생략)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수질과----- -----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현행과 같음) ②----- 수질향상방안 등----- -----

제33편 국토개발·도시 제3장 도시 수도법

제19조의2(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①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97. 8. 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7. 8. 28〉

[본조신설 94. 8. 3]

제20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4. 8. 3, 97. 8. 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4. 8. 3〉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신설 93. 12. 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 12. 27, 94. 8. 3, 97. 8. 28〉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4. 8. 3, 97. 8. 28〉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사업을 폐지…….